#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6. 1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4.1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4.13.

####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0. 4. 21.) 상정, 심사, 보류
-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0. 6. 16.) 재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민화영】

#### 가. 제안이유

서울시 도심 6개 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위 6개 자치구간 공동 대응 및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동 규약안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 가) 명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 나) 서울특별시 도심6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

#### 2) 구성(제3조)

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사무소 위치(제4조)

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 4) 기능(제5조)

- 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 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 다)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
- 라)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
- 마)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회장(제6조)

- 가) 회장 1명
- 나) 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임기는 1년, 연임하지 아니함 (초대회장의 임기: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
- 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 총괄
- 라)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 마)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 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

## 6) 회의(제7조)

- 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 나)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개최
- 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 라)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마) 협의안건 회장에게 서면 제출,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 소집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

### 7) 의견 청취 및 사무처리(제8조~제9조)

- 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 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1명(협의 회 업무담당)을 둠

## 8) 회의록 작성, 자료제출 요구,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 가)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나)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
- 다)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 9) 실무협의회(제13조)

- 가) 실무협의회 위원: 도심6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나) 위원장: 회장 구의 실무협의회 위원. 서기 : 회장구의 협의회 업무담당
- 다) 상·하반기 나누어 각 1회 개최,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서면 협의 가능

#### 10) 수입, 지출(제14조~제15조)

- 가)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
- 나)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 구에 납부
- 다) 회장구에서 당해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 라)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도심6구가 균등하게 분담
- 마) 협의회 회비 지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바) 회장 구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구에 세입 조치

## 11) 회계보고 및 결산(제16조)

- 가)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나)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 보고
- 다) 회계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실무자: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12) 수당(제17조)

가)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가능

## 13)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제18조~제19조)

- 가)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 나)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포구를 비롯 6개 구가 참여하는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임.
- 현대의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임.

각종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국제 관광객 수는 13억 2,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관광 산업 일자리는 약 313만 개로 전 세계 일자리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등 21C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9년 9월 종로구에서 도심 관광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6개 구를 회원으로 하는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후 관계 구청장 등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협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여 동 규약안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본 동의안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자치구는 지리적으로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원, 편리한 접근성 등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2019년에 실시된 '마포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마포구 관광객의 유입/유출 경로를 모바일 이동량 분석으로 계량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바, 관광객의 마포구 유·출입 경로 비중이 높은 곳으로 중구,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자치구간의 관광객 상호 이동이 빈번함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각 자치구 관광산업 상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본 규약의 제정·시행은 시의적절하며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표] 2019년 관광객 유입/유출 경로 분석

('마포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2019년 12월)

2차 유입경로		1차 유입경로		1차 유출경로	2차 유출경로	
종로구	28.8%				서대문구	25.3%
서대문구	23.0%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종로구	23.7%
용산구	8.3%	21.2%		23.6%	가평군	7.9%
가평군	6.8%		마		용산구	6.4%
중구	38.1%				중구	43.8%
종로구	21.0%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종로구	20.3%
용산구	5.0%	19.8%	_	18.4%	중구(인천)	4.9%
영등포구	4.1%		玊		용산구	4.5%
중구	41.6%				중구	56.1%
서대문구	13.9%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16.4%
강서구	4.6%	12.6%		14.2%	용산구	4.9%
용산구	4.2%		구		강남구	2.7%
중구	31.9%				중구	29.7%
종로구	11.4%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종로구	10.9%
서대문구	7.4%	6.1%		6.3%	서대문구	8.4%
영등포구	6.5%				가평군	8.2%

- 다음 검토의견으로, 본 규약 동의안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동의 안에 제시한 운영 규약은 총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 임원 구성 및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4조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규약 제14조제1항에서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회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안건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임. 참고로 마포구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등 총 11개의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마포구의 행정협의회 가입 현황 - 붙임 ]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각종 협의회의 회비 납부 및 사용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권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부담금의 산정 및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의 전용을 금지함은 물론, 부담금이 회장 구의 사적인 통장이나 협의회 명의의 계좌에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회계 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규약안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제14조(수입) 제2항에서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회장 구에서는 당해 연도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담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지출의 세부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부담금 수입 ·지출 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